

	<p>정책 설명자료</p>	<p>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 장 하인호 (044-205-2841) 사무관 정영수 (044-205-2847)</p>
	<p>2020년 3월31일(화) 조간 (3. 30. 15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과 장 박주영 (02-2100-2620) 사무관 송현지 (02-2100-2621)</p> <p>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 장 신종철 (02-2110-1520) 사무관 임종철 (02-2110-1529)</p>

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

I 그간의 경과

□ 법률안 입법 과정

-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'20.1.9.)
-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('20.2.4.) 및 시행 예정('20.8.5.)

□ 하위입법 관련 의견수렴

- 관계부처 협의* 및 전문가 의견 수렴**, 시민사회 의견서 검토***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세부 쟁점 및 시행령 개정안 논의

* 행안부, 보호위, 방통위, 금융위, 과기부,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참여

** 산업계, 법조계 및 학계, 관련 협회 등 참여

*** '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'(2.17)

II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

1. 가명정보 결합(안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29조의4)

- (전문기관) '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'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,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* 가능

*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



- (결합 및 반출 절차)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 처리 가능, 반출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

-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(3명 이상)를 구성하여,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을 심사*

* ▲반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원래 보유한 정보와 반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는지, ▲반출정보의 처리 목적과 환경에 비추어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이 적정한지, ▲데이터 성격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정성 및 반출 목적 달성 후 파기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

- (전문기관 지정) 보호위가 고시하는 요건(인력·조직, 시설·장비, 재정 능력)* 을 갖추면 지정 가능

* **인력(안)** : 전문기관 내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마련, 전문인력 기준 (정보관리기술사, 정보보안기사 등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업무 수행 경험) 충족 등

시설·장비(안) : (시설) 결합실 및 분석 공간 별도 운영, 접근 권한 관리, (장비) 안전한 분석을 위한 분석실 모니터링 및 분석 행위 로그 저장 등

-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 안전성 확보 규범 및 관행이 정착되면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확대 지정
- (전문기관 관리·감독) 지정권자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과 시설 유지 여부를, 보호위가 가명정보 처리실태 등 관리 감독
 - ※ 기타 세부사항은 (가칭)‘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고시’ 신설하여 규정

2.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(안 제29조의5)

- (안전조치) 내부관리계획* 수립, 추가 정보 별도 분리보관, 접근 권한 분리, 물리적·기술적 안전조치 실시
 - *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, 취급자에 대한 교육,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포함(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)
- (기록 작성·보관) 가명정보 처리 목적, 보유기간, 이용 및 파기 등 내용의 작성 및 보관
- (파기)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

<참고 : 위반시 제재 수준>	
▲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	⇒ 3천만원 이하 과태료
▲ 가명처리 관련 기록 작성 의무 미준수	⇒ 1천만원 이하 과태료
▲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로 개인정보(가명정보 포함)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	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※ 참고로, 재식별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시	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법 제71조), 전체 매출액의 3%까지 과징금 병과

3.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 시 고려사항(안 제14조의2)

-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 범위에서 추가적인 이용·제공 가능
 - ①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,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, ③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, ④ 가명처리로 추가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 할 것
 - ※ EU GDPR(제6조4호)의 양립 가능성 요건 규정과 유사

<추가처리의 예시>

- 온라인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(주소정보)를 수집한 경우, 이를 배송 목적으로 택배업체에 제공 가능

⇒ ① 추가처리 목적(배송)과 당초 수집목적(온라인 판매)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,
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가능성(온라인 구매에 따른 배송)이 있으며,
③ 추가 처리(배송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 제공)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음

4. 생체인식정보와 인종·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(안 제18조)

- (생체인식정보)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·홍채·안면 등 생체인식정보(Biometric Data)는 개인의 고유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⇒ 민감정보에 “개인의 신체적, 생리적,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”를 포함

- (인종·민족정보)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할 필요

⇒ 민감정보에 “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”를 포함

- (효과) 변화하는 사회·기술 환경과 국제적 환경(EU 등)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감정보로 규정하여, 처리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더욱 안전하게 보호

※ EU : 「GDPR」 제9조에서 “특정범주의 개인정보(민감정보)”로 정의
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에서는 민감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허용

5.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

○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기 변경

-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 해소 기대

현행		변경 후
① (보호위) 12월말 차차년도 시행계획 지침 통보	⇒	① (보호위) 6월말 차년도 시행계획 지침 통보
② (중앙행정기관) 2월말 차년도 시행계획 제출		② (중앙행정기관) 9월말 차년도 시행계획 제출
③ (보호위) 4월말 차년도 시행계획 심의·의결		③ (보호위) 12월말 차년도 시행계획 심의·의결

○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등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
-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마련
-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정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도 협의회 설치

1. 고시

- **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동 규정을 고시로 신설**
※ (가칭)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, 법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 규정
- **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신설**
*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서식, 반출 승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(파기 및 안전조치 계획과 재식별 가능여부) 등 구체적 가명정보 결합·반출승인 절차 및 기준,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·조직·시설·장비·재정능력 세부요건 등 규정
- **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소관변경 사항 반영**
※ (행안부→보호위)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,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,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, (행안부·방통위·과기부→보호위·과기부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

2. 가이드라인(42종)

- **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국민들의 질의가 많은 사항 추가 반영**
※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에 관한 사항, 근로자 감시장비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
- **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 제정 시 안내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낮은 가이드라인은 폐지**
※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,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등

3.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

- **최근 법령 개정사항 및 그간 법 운영 과정에서 해석례가 정립된 사항**
※ 유출신고 기준, 개인정보 열람청구 대응 절차 등
- **정보통신망법 이관에 따른 사항** * 법령 및 하위 고시 해설 포함
- **이번 법 개정사항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사례**
※ (가명처리) 가명정보 처리 목적, 데이터의 성격,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(가명정보 활용 범위) 산업계의 주요 사례에 대한 질의를 받아 가능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명시 등

☞ 고시는 5월 중 입법예고하여 7월 중 개정 완료,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법 시행(8.5)에 맞추어 마련

1. 정보통신망법 → 개인정보 보호법 이관 규정 정비

-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*들은 삭제

* 개인정보보호지침(제3조),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등(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)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(제54조의2),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보호조치(제67조), 과징금 산정기준(제69조의2, 제69조의3), 기타 이관 조항

- 삭제된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통합하여 반영

<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이관된 규정 >

▶개인정보의 보호조치(안 제30조제2항), ▶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(안 제39조의2), ▶유출 등의 통지·신고(안 제48조의3), ▶개인정보의 파기(유효기간제, 안 제48조의4), ▶이용내역 통지(안 제48조의5), ▶손해배상의 보장(안 제48조의6), ▶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·차단 전문기관 지정(안 제48조의7), ▶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범위(안 제48조의8), ▶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보호조치(안 제48조의9), ▶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(안 제48조의10), ▶과징금 부과 및 납부(안 제48조의11), ▶과징금 환급 가산금 이자율(안 제48조의12) 등

2.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업무 관련 규정 정비

-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, 앱 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이 삭제된 조문에 대한 체계 정비

* (예시) ‘개인정보’를 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’로,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’을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로 변경 등

IV

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

1. 가명정보 결합(안 제22조의4, 제14조의2)

- (데이터 전문기관) 비영리법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을 전문기관 자격요건*으로 하고, 위험관리체계** 등 구축 의무화

* 우선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지정하고,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까지 확대 지정

** 데이터 전문기관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 업무 수행직원 분리, 전문기관 업무 수행 서버와 그 외 업무 수행 서버 분리 등

- (데이터 결합절차) 아래의 절차에 따라 데이터 결합 수행

절차	주체	의무
결합의뢰	결합의뢰 기관	①금융위가 정한 양식(고시)에 따라 결합신청 ②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은 결합키 로 대체 ③개인신용정보는 가명처리 ④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
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	전문기관	①데이터 결합 후 결합키는 삭제 또는 대체키 전환 ②결합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전달 ③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를 즉각 삭제
결합 이후	전문기관	결합 관련 사항 기록·관리, 연 1회 금융위 보고

2.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(안 제18조의6, 제28조의3)

-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시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이동

신용정보 제공자	제공되는 신용정보	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공공기관 등	1. 금융거래정보 2. 국세·지방세 납부정보 3. 보험료 납부정보 4.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	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CB, 마이데이터 사업자

3.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(안 제6조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8조의3~제18조의5)

<참고 :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단위 개편 >

- 개정 「신용정보법」은 신용정보업(CB:Credit Bureau)을 **개인CB**(전문개인CB 포함), **개인사업자CB**, **기업CB**(신용등급제공, 기술신용평가, 정보제공)로 구분

구분		CB업 허가단위별 영업내용
개인CB		개인신용상태의 평가
	비금융전문CB	개인신용상태의 평가를 비금융정보만으로 수행
개인사업자CB		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
기업CB	정보조회업	기업신용정보를 통합·분석·가공하여 제공하는 회사
	기술신용평가	기업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
	기업등급제공	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

- **(허가요건)**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**시스템·설비 요건*** 규정, 허가단위별 자본금요건(5~50억원)에 따라 정해진 **전문인력요건**(2~10인)을 갖추도록 함

* 고시를 통해 암호화시스템, 백업 및 복구시스템 구비,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 구비,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용·개발능력 등의 세부요건 규정 예정

- **(겸영·부수업무)** CB업자가 **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** 등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른 **인허가·등록**을 거쳐 **겸업**할 수 있도록 허용

-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**전문개인CB업, 기업정보조회업**의 경우에는 **비금융업무도 다양하게 겸영**할 수 있도록 함

- **(행위규칙)** **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*** 금지, **등급쇼핑 발생 방지****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

* 자사·계열사 고객 신용평점 우대, 계열사 경쟁회사 등의 신용평가 하향

** 신용평가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행위 등

4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(안 제6조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8조의6)

- (허가요건)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·설비 요건* 규정

* 고시를 통해 암호화시스템, 백업 및 복구시스템 구비,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 구비,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용·개발능력 등의 세부요건 규정 예정

- (경영·부수업무) 마이데이터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전자금융업, 대출 중개·주선,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자문·일임업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·등록을 거쳐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

- (행위규칙) 개인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금지

* 예 : 정보주체의 요구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,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

※ 4월 중 구체적인 「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」 추가 발표 예정

5.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(안 제16조의2)

-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선임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및 CB사는 연 1회 이상 「신용정보법」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(금융보안원)에 제출토록 규정

-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현장점검, 테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

6. 동의서 양식 개편 (안 제29조의2, 제29조의3)

- 금융회사가 정보활용·제공 요약동의서를 징구할 때, 필수 고지사항*을 규정하고, 불이익한 조치는 축소고지할 수 없도록 함

* ①「개보법」 등에 따른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, 수집·제공대상 정보, 정보보유·제공기간 등 ②전체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, ③동의서 등급

- 해당 동의에 따른 위험·혜택, 민감정보 포함 여부 등과 함께 가독성, 요약정보 여부 등을 부여된 평가등급과 함께 고지

1. 고시

- 현행 「신용정보업 감독규정」 및 「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
 - * 신용정보업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상세 물적요건, 신용정보업자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세부 절차, 신용정보업자 등의 경영·부수업무 확대, 데이터 결합·제공·처리·보관의 절차 및 방법, 금융권 정보활용·관리 상시평가제 세부 심사기준,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세부 기준 등
- 법령 개정사항 **현행화** 및 **소관변경 사항 반영**

2. 가이드라인

- 금융위에서 운영중인 **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**
 - 기존 내용에 대한 **개념, 사례 등을 보강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***을 추가
 - * 금융권 정보활용·관리 상시평가제,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등
- 개정 데이터 3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**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폐지**

3. 신용정보법령 및 지침·고시 해설서

-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**가명·익명 처리, 가명·익명정보 활용, 데이터 결합** 등을 설명하는 **해설서 발간**
 - **금융분야 특성에 맞는 사례, 예시** 등을 설명하여 금융회사 등이 개정법에 따라 **빅데이터 활용을 원활히** 할 수 있도록 지원

V

향후 계획

□ 후속조치 일정

○ (시행령) 입법예고 진행, 7월 중 개정 완료

※ 입법예고(~5월) → 규제심사(5월) → 법제처 심사(6월) → 차관·국무회의(7월)

○ (고시) 행정예고(5월 중) 추진, 7월 중 개정 완료

※ 입안 및 관계자 협의(~4월) → 행정예고(5월) → 규제심사(6월) → 발령(7월)

○ (기타) 법 시행(8.5)에 맞추어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법령 해설서 마련

※ 초안 마련(~4월) →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보완(~7월) → 최종안 배포(8월)

□ 사회적 논의

○ 산업계, 시민사회단체, 각계 전문가와의 공식·비공식적인 대화와 토론 및 주기적 간담회 등 소통

○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전자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병행

질문	답변
<p>① 가명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해 보이는데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가명정보 활용 목적은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어서,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범위를 넘게 됨 - '법 제안이유*, 과학적 연구에 민간투자 연구가 포함되는 점(법 제2조8호)을 고려하여 산업적 연구가 허용됨'을 해설서를 통해 명확히 하겠음 * (제안이유) 새로운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■ 해설서에 원칙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적 연구가 허용됨을 밝히고, - '4차위의 데이터 옴부즈만,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산업계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례 및 의견을 수렴하여, 사례별 활용 가능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해설서에 안내할 예정임
<p>②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정법에 따르면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, - 가명정보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얻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보(익명정보 또는 가명정보)로만 반출할 수 있음(법 제28조의3) ■ 또한, 보호위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등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·감독을 수행함(영 제29조의4)

질문	답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참고로,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(법 제28조의2)
<p>③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하는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행령에서 인력·조직, 시설·장비,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, 3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음(영 제29조의3) ■ 향후, 고시에서 구체적인 시설·인력·장비·기술 등의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규정할 것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세부적인 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고시에 반영(5월 중 행정예고) ■ 참고로, 초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*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되, 안전성 확보 규범 및 관행이 정착되면 데이터 결합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민간기관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국정보화진흥원, 사회보장정보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검토
<p>④ 가명정보 결합의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신청)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(신청기관)는 전문기관에 '결합 신청서'를 제출 ■ (결합)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받아 결합을 수행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는 별도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 등)이 생성하여 전문기관에 제공 ■ (분석) 신청기관은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

질문	답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반출) 신청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*,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 받음 * 분석공간에서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분석공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※ 세부적인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는 고시에 반영 (5월 중 행정예고)
<p>⑤ 결합된 가명정보의 반출승인 기준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문기관은 데이터 이용과 보안,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반출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,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을 심사함 ■ 이때 위원회는 △반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원래 보유한 정보와 반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는지, △반출정보의 처리 환경과 상황에 비추어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이 적정한지, △반출 목적에 따라 적정한 이용기간 후 파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※ 세부적인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는 고시에 반영 (5월 중 행정예고)
<p>⑥ '민감정보'에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 내용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번에 민감정보에 추가된 정보는 ①개인 식별을 위한 생체인식정보와 ②불합리한 차별이 우려되는 민족·인종정보임(영 제18조) ■ 특히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생체적 특성 모두를 말하는 것(Bio data)이 아니라,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정보(Biometric data)에 한하는 것임

질문	답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체식별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되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으나, - 생체인식 정보가 본인인증이나 금융거래 등 개인에게 중요한 업무에 이용되고 침해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 규범(EU GDPR)에 맞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음
<p>⑦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기를 변경한 이유는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 시행령 상 기본계획은 시행되는 전전년도 12월말까지, 시행계획은 시행되는 전년도 4월말까지 수립이 필요하여,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존재 ■ 따라서 시행 전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변경하고, ■ 시행계획은 매년 12월말 차년도 계획을 확정하여 계획과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<p>⑧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마련 필요 -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협의회 지원하고, 필요시 특정 현안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함 ■ 또한, 시·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신설하여 정책 협업, 현장의견 수렴 및 전달, 정책·기술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촉진시키고자 함

질문	답변
<p>⑨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과 달라지는 데이터 활용 내용은?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활용 가능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해야 함 ■ 개정 전에는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정 후에는, 다양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에서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 후 결합하여 활용 가능 ■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제공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제공받은 자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(가명정보 포함)와 결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함
<p>⑩ 향후 하위법령 추진 일정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행령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되며, 그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후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,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 차관·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법 시행(8.5)에 맞추어 공포하겠음 ■ 고시 등 행정규칙은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, 6월 규제심사를 거쳐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발령하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 가이드라인 및 법령 해설서는 법 시행(8.5)에 맞추어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

질문	답변
<p>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개인정보 보호조치,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특례로 이관하거나 일반조항에 통합하여 반영하였음 ※ (이관규정) 개인정보 보호조치,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, 개인정보 유효기간제, 이용내역 통지,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, 손해배상책임의 보장, 국내대리인 지정, 국외이전 시 보호조치, 과징금 부과 등 ■ 온라인에서의 앱 접근권한, 온라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존치되어 방통위가 계속하여 수행할 예정임 (영 제9조의2, 제9조의3~제9조의7)
<p>②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앞으로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었으므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됨 -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(영 제30조제2항,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2까지 등)

질문	답변
<p>① 가명정보 결합의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신청) 가명정보의 결합을 원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(신청기관)는 전문기관에 '결합 신청서'를 제출 ■ (결합)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받아 결합을 수행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는 신청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 ■ (반출) 신청기관은 결합된 가명정보의 익명·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*을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 받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데이터 전문기관 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반출된 정보의 식별가능성,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이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** 필요시 데이터 반출 없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분석공간을 통해 데이터 분석 가능 <p>※ 보다 세부적인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는 향후 '신용정보업 감독규정'에서 규정할 예정(4월 중 규정변경예고)</p>
<p>② CB사에 경영·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는 이유는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양질의 데이터 분석·관리 노하우를 지닌 CB사가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토록 유도하기 위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국, 영국, 호주 등 해외의 경우 CB사들이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 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처벌이 강화되었고,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 책임성이 제고됨을 고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인정보유출시 최대 10년/1억원의 징역/벌금, 징벌적 과징금(매출액의 3%) 부과, 징벌적 손해배상(실손해액의 5배), 법정 손해배상(300만원) 도입

질문	답변
<p>③ 금융회사도 마이데이터 산업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?</p> <p>단일 지주사 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원칙적으로 역량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을 허용하여 건전한 경쟁과 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 ■ 4월 중 「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」을 통해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발표하겠음
<p>④ 개정 법 시행 이후 스크레이핑은 금지되는 것인지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스크레이핑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며, 그 외의 일반적 스크레이핑은 금지 되지 않음 -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업은 스크레이핑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